

- 장기 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



투자설명서



KDB ASSET MANAGEMENT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 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

투자신탁명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
자산운용회사명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명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명 및 상담 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증권 (☎ 1588-3322, www.bestez.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산업은행 (☎ 1588-1500, www.kd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한화증권 (☎ 02-3772-7000, www.koreastock.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유화증권 (☎ 02-3770-0101, www.yh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하나은행 (☎ 1588-1111, www.hana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대신증권(주) (☎ 02-769-2000, www.daishi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동부증권 (☎ 02-369-3200, www.winnet.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SK증권 (☎ 1588-8245, www.priden.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HMC투자증권 (☎ 02-3787-2114, www.hmcib.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우리투자증권 (☎ 02-768-7000, www.wooriw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대한생명 (☎ 1588-6363, www.korealife.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교보증권 (☎ 02-3771-9399, www.iproves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유진투자증권 (☎ 1588-6300, www.eugenefn.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p>

	전하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 일	2008년 11월 19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 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 설명서):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 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쪽)

- 1. 명칭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39383)
- 2. 펀드존속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종류 단기금융투자신탁(법인용),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 4. 자산운용회사 산은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7~10 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입니다.
2. 주요투자전략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신용등급 AAA급), 유동성 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운용합니다. 또한 수시입출금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수익증권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 본문(16~17쪽)을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5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www.kdbasset.co.kr)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강은규	41세	팀장	6개	22,182억원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미래에셋생명 일반계정운용팀장 (3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단위: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연 5.18	연 4.87	연 4.57	-	연 4.10
비교지수	-	-	-	-	-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본문 10~15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	
수익증권 판매기준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¹⁾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¹⁾	해당사항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05%
		판매회사보수	연 0.12%
		기타보수	연 0.03%
		보수합계	연 0.20%
	기타비용	연 0.01%	
총보수·비용비율²⁾		연 0.21%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거주자인 개인에 한하여 2007년 6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하여 **소득세 등(2008.11.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오전9시~오후 5시) 중 매입 또는 환매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D+2)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평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기 투자설명서표지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
 는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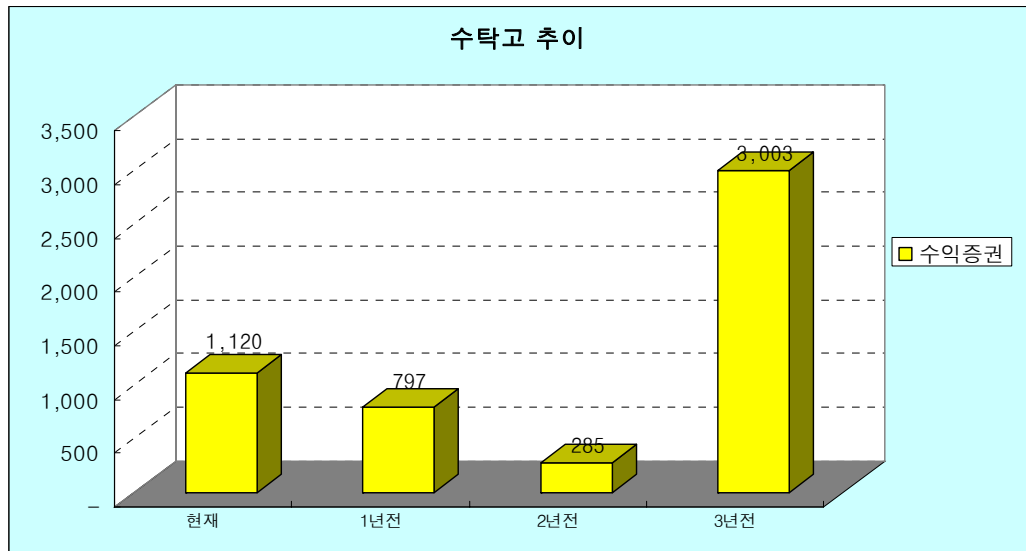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 칭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 (펀드코드: 39383)
- 2.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3. 분 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법인용),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 4. 자산운용회사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3. 12. 02 투자신탁 설정
 - 2004. 07. 05 투자제한사항 개정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
 - 2004. 08. 06 신탁약관 변경
 - 2005. 06. 07 Late Trading 실시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
 - 2005. 11. 21 MMF 미래가격제 시행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
 - 2006. 07. 01 신탁약관 변경
 - 2008. 07. 24 신탁약관 변경(보수인하 및 투자대상 확대)

6. 수탁고 추이 (단위:억원,%)

연도	현재 20081119	1년전 20071119	2년전 20061119	3년전 20051119
수탁고금액(전체)	1,119.60	797.22	284.94	3,003.27
수탁고증가율(전체)	40.44	179.78	-90.51	0.00



- 7. 해지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 추구

이 투자신탁은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법인고객에게만 판매 가능한 **법인용 MMF**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구분	내용
자산운용 기본방침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AAA급) 등의 유동성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수시입출금을 감안한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시장 금리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해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등이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펀드의 수익구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 대부분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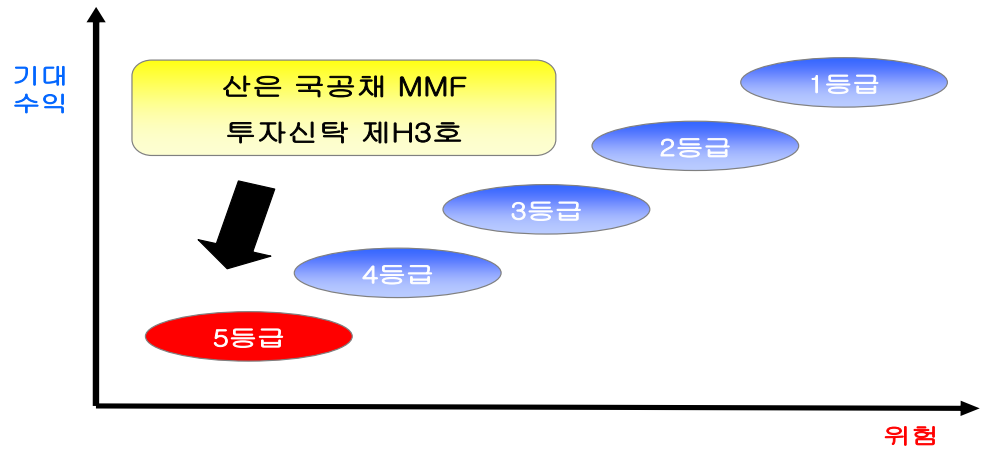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 특수채, CD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금융투자신탁이므로 **5등급의 위험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단기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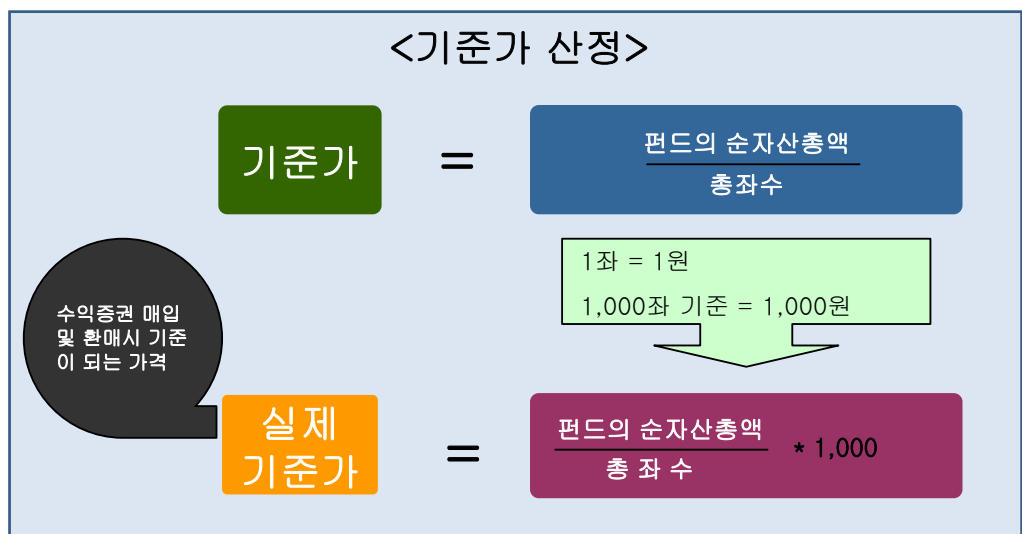
<예시>

위험 등급	위험 수준 내용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 등에 8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예:주식형) (상품예)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주식자투자신탁 산은세계최강국내기업주식투자신탁제1호
2등급	높은 위험	주식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예:주식혼합형, 인덱스형) (상품예)산은대표기업지수시스템혼합형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주식 등에 60%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장외파생 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예: 주가·지수연동 장외파생상품, 채권혼합형, 투기등급 채권형) 상품예)산은하이디배당혼합투자회사제1호 산은안정혼합투자신탁제1호
4등급	낮은 위험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특별자산·실물자산펀드(신용 보강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등 (예: 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원금보존추구의 장외파생상품) (상품예)산은ValuePlus채권투자신탁제1호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 (예 : MMF 등) (상품예)산은국공채법인MMF투자신탁제1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기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산은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6. 운용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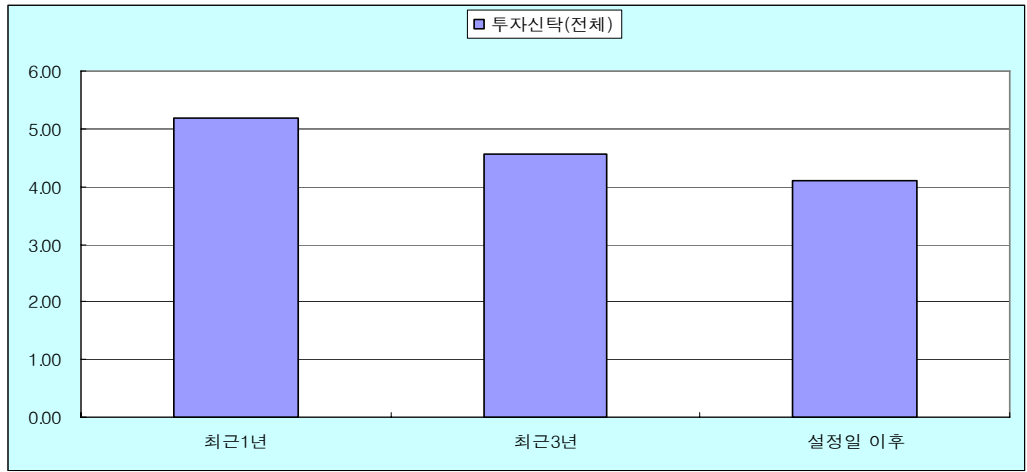
구분	내용
성명	강은규
직위	채권운용팀 팀장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사항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미래에셋생명 일반계정운용팀장 (3년) SK생명 투자팀 (4년)

※상기 운용역은 당 펀드의 책임 운용인력입니다.
책임 운용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5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연도	최근1년 2007.11.20 ~ 2008.11.19	최근3년 2005.11.20 ~ 2008.11.19	설정일 이후 2003.12.02 ~ 2008.11.19
투자신탁(전체)	5.18	4.57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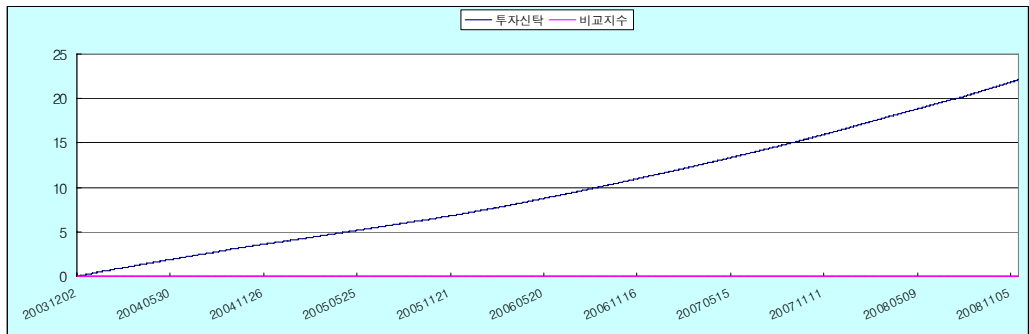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투자 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연도	최근1년차 2007.11.20 ~ 2008.11.19	최근2년차 2006.11.20 ~ 2007.11.19	최근3년차 2005.11.20 ~ 2006.11.19
투자신탁(전체)	5.17	4.56	3.96



※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투자 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비고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1회	신탁재산편입
선취 판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수익증권 취득시	판매회사 취득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5%	매 1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시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12%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1%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기타비용 미포함)	순자산총액의 연 0.20%	-
	총 보수·비용비율 (기타비용 포함)	순자산총액의 연 0.21%	

※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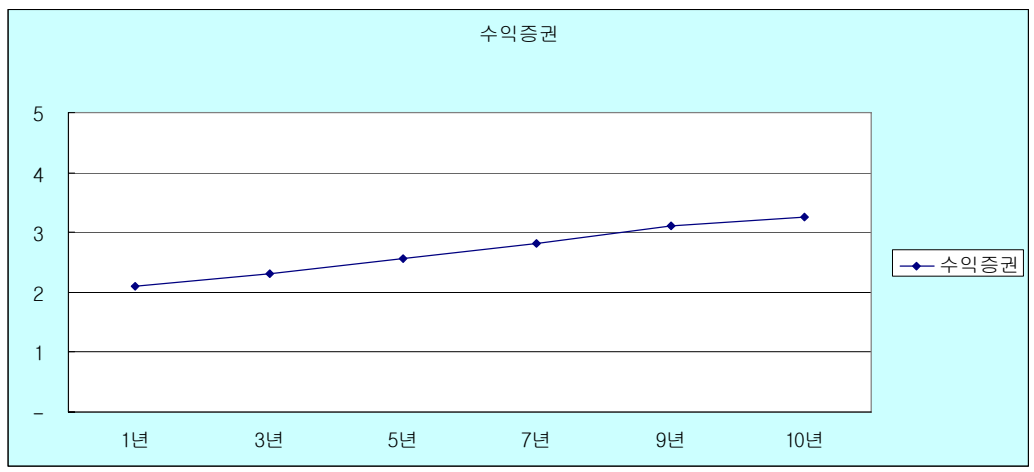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만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보수 및 비용	2.10	2.32	2.55	3.26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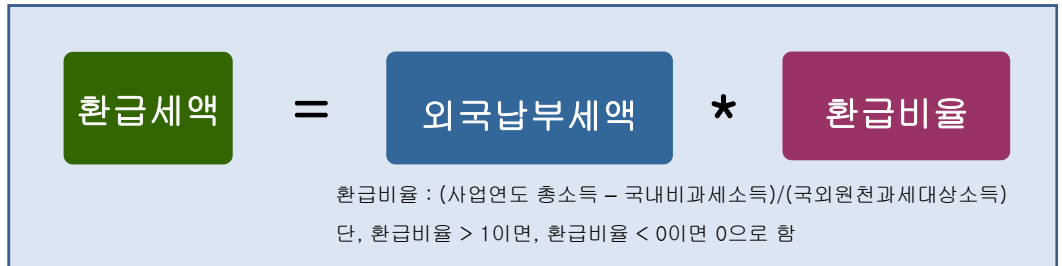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이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 11. 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 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판매제한

-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실지명의 법인에게만 판매합니다.
-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 분	T	T+1
매입청구	당일	2 일차
오후 5 시 이전	입금일 (매입청구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격적용일)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 분	T	T+1	T+2
매입청구	당일	2 일차	3 일차

오후 5 시 이후	입금일	(매입청구일)	수익증권매입일 (기준가격적용일)
-----------	-----	---------	----------------------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1 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 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 분	T	T+1
환매청구	당일	2 일차
오후 5 시 이전	환매 청구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 분	T	T+1	T+2
환매청구	당일	2 일차	3 일차
오후 5 시 이후	환매 청구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 지급)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최소(정정)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

능합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를 청구한 시간으로 보며, 이는 판매회사의 Main 컴퓨터에서 인지·처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환매청구 없이 주기적으로 매입·환매 처리되는 자동이체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52조의2제3항)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 (21~22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익 등의 분배 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 (22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 기본 전략

구 분	내 용
자산운용 기본방침	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을 국공채, 특수채와 우량은행 발행 CD(AAA 급) 등의 유동성자산 위주로 편입하여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가중평균듀레이션과 개별자산의 최대만기를 약관상의 규정보다 짧게 유지하여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수시입출금을 감안한 유동성을 중점 관리합니다.
	시장 금리상황에 따라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언제든지 해지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 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 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펀드의 수익구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국공채, 특수채 및 CD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 등 유 가증권 투자 위험	엄격한 신용등급별 투자제한으로 신용risk 발생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상황의 변화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 유가증권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u>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u>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투자 대상

※ 투자비용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주요 내용
①	채권	증권거래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u>제 3 호</u> 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신용카드채권, 할부금융채권, 리스채권, 증권회사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 이라 한다)
②	어음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한국증권금융취이 발행·채무증서 및 <u>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u>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어음 (이하 “어음등” 이라 한다)
③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u>국공채 중심으로 운용되는 단기금융투자신탁</u> 의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법에 의해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및 <u>국공채 전용 단기금융투자회사</u> 가 발행한 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미만
④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 이하
⑤	단기 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⑥	금융기관에 의 예치	만기 6 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⑦	기타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투자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운용 제한

구분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p>투자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장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법시행령 제 6 조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③	<p>동일종목 투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④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행위</p>
⑤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행위</p>
⑥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수익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p>
⑦	<p>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p>
⑧	<p>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p> <p>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 2, 제3호의3의 자산 또는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p> <p>나. <u>국공채 전용</u> 단기금융투자신탁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간접투자증권</p> <p>다. 주식관련 사채 및 사모사채</p> <p>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p> <p>마. 자산의 기준금리가 그 자산의 만기구조보다 장기의 만기구조를 가진 다른 자산의 발행금리 또는 유통수익률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자산</p> <p>바. 위의 라목 및 마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p>
⑨	<p>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 1년 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행위</p>
⑩	<p>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행위</p>
⑪	<p>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신용평가등급 제한 등

구분	내용
①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채권 및 어음 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20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 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투자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③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조 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이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자산유동화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선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p>③중개회사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 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 수익증권의 매입 및 환매 절차 적용 예외사항

1. 거래당일의 시장정보를 활용한 수익자간 불균형 문제 발생여지가 없는 다음의 MMF거래에 대해 수익자는 매입 및 환매청구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매입 및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판매회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자가 유가증권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 ②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다만, 판매회사는 각 사별로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 본래 목적에 충실한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매입 및 환매절차 적용 예외사항”은 판매회사별로 내부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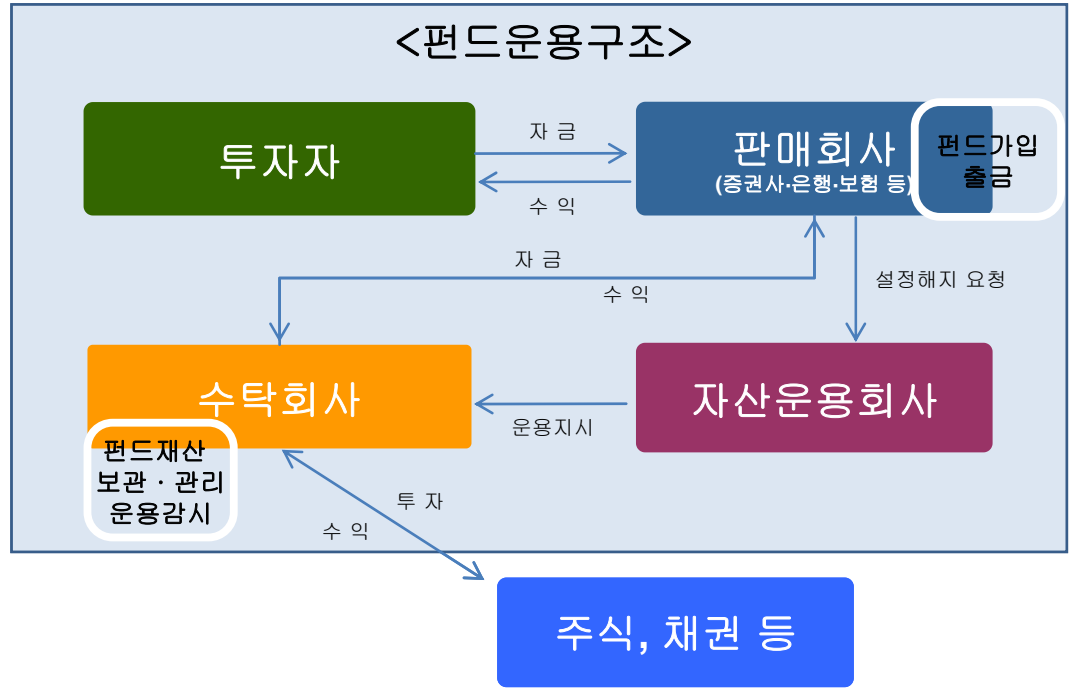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펀드운용구조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HP B/D 4층 (☎02-3774-8043)

2. 주요 업무

(1)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①(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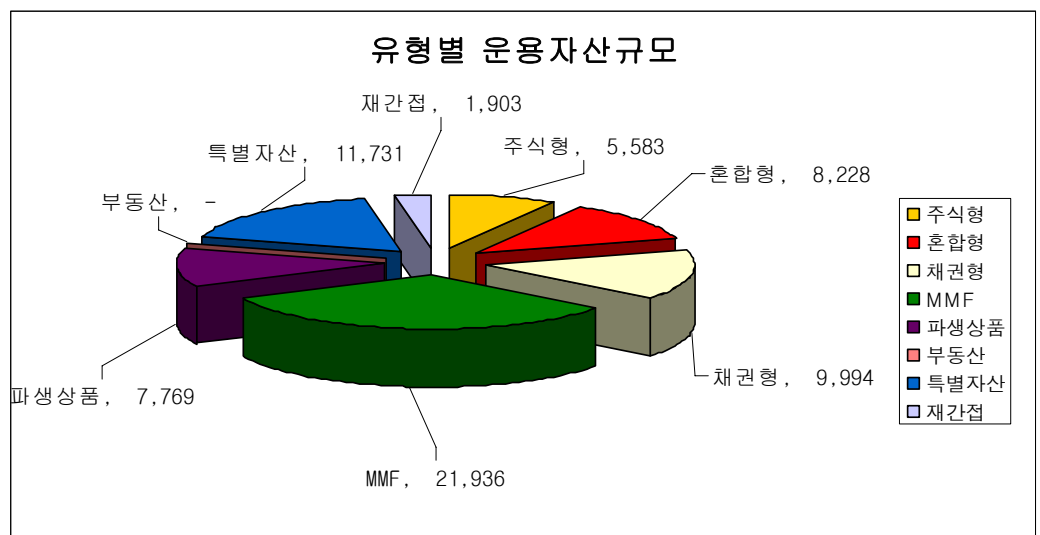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07.03.31	08.03.31	항 목	07.03.31	08.03.31
유동자산	60,166	65,254	영업수익	9,068	12,185
고정자산	4,109	2,893	영업비용	5,661	7,070
자산총계	64,275	68,147	영업이익	3,407	5,115
유동부채	6,952	6,998	영업외수익	79	12
고정부채	152	282	영업외비용	11	5
부채총계	7,104	7,280	경상이익	3,475	5,121
자본금	38,895	38,895	특별이익	-	-
자본잉여금	6,529	6,529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11,747	15,443	세전순이익	3,475	5,121
자본조정	0	0	법인세비용	964	1,425
자본총계	57,171	60,867	당기순이익	2,511	3,696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11월 19일 기준, 단위: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합 계
5,583	8,228	9,994	21,936	7,769	-	11,731	1,903	67,144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강은규 **	41세	6개	22,882억원	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현) 미래에셋생명 일반계정운용팀장 SK생명 투자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 당해 투자신탁은 팀 체제로 운용(팀운용)되며, **로 표시 된 운용인력은 해당펀드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상기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 연혁
대우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1588-3322 - 홈페이지: www.bestez.com	1970.09 설립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1588-1500 - 홈페이지: www.kdb.co.kr	1954.04 설립
한화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02-3772-7000 - 홈페이지: www.koreastock.co.kr	1996.10 한화증권으로 상호변경
유화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02-3770-0101 - 홈페이지: www.yhs.co.kr	1962.06 설립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588-1111 - 홈페이지: www.hanabank.co.kr	1991.07 개업
대신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02-769-2000 - 홈페이지: www.daishin.co.kr	1975.04 대신증권(주)로 상호 변경
동부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02-369-3200 - 홈페이지: www.winnet.co.kr	1991.07 동부증권(주)로 상호변경

SK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1588-8245 - 홈페이지: www.priden.com	1998.01 SK증권으로 상호 변경
HMC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02-3787-2114 - 홈페이지: www.hmcib.com	2008.04 HMC투자증권(주)로 상호 변경
우리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02-768-7000 - 홈페이지: www.wooriwm.com	2005.04 우리투자증권 출범
대한생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1588-6363 - 홈페이지: www.korealife.com	2002.12 대한생명 한화그룹으로 편입
교보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02-3771-9399 - 홈페이지: www.iprovest.com	1994.04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유진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1588-6300 - 홈페이지: www.eugenefn.com	2007.12 서울투자증권(주)에서 유진투자증권(주) 사명 변경

2. 주요 업무

(1) 판매회사의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의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02-1588-1111)
회사 연혁	2002년 12월 통합 '하나은행'출범

2. 주요 업무

(1) 수탁회사의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02-3771-9834)
회사 연혁	2000년 05월 에이애텍 설립등기

2.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건물 4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년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

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산운용회사 (www.kdbasset.co.kr), 판매회사(상기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dbasset.co.kr)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수탁회사 보고서는 수탁회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회사(상기 판매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게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자산운용회사(www.kdbasset.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 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용어	내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 옵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 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산은 국공채 MMF 투자신탁 제H3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